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25호)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27호)
-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46호)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7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김은혜의원안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3
II. 백혜련의원안	5
1. 제안경위	5
2. 제안이유	5
3. 주요내용	6
III. 유상범의원안	9
1. 제안경위	9
2. 제안이유	9
3. 주요내용	11
IV. 한병도의원안	13
1. 제안경위	13
2. 제안이유	13
3. 주요내용	16
V. 검토의견	18
1. 제정안의 취지	18

2. 특별검사제도의 연혁	20
3. 제정안의 주요내용	22
4. 조문별 검토	33
가. 제명,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	33
나.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안 제3조~제5조) ...	51
다. 특별검사등(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6조~제8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6조~제9조)	62
라.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9조~제12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10조~제13조)	85
마.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 등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3조~제17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14조~제18조)	98
바. 재판권,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 (김은혜의원안 제18조~제23조,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 18조~제24조, 유상범의원안 제19조~제26조 및 안 부칙)	104
 ※ 참고자료	 122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122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123

I. 김은혜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은혜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6. 8.
3. 회부연월일 : 2026. 7. 1.

2. 제안이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인천 연수구, 부산 중구, 대구 남구, 울산 남구 등 전국 각지의 투표소 50여곳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용지가 누락되어 참정권이 정면으로 훼손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본령인 선거에 있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필수적인 투표 용지를 의도적으로 유권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게 준비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권리 행사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야기시켰음.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반하고 투표와 개표를 강행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투표 및 개표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유권자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표방송을 통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음으로서 공직선거법의 근본 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하였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개표함을 반출하기 이전에 투표 농단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회와 국민의 분명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이후 이를 배반하고 경찰 등 국가의 물리력을 동원해 투표소 인근의 시민들을 강제로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해를 입는 국가폭력 사태를 유발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친인척 채용 특혜 논란, 위법 투표 관리 논란 등 수차례의 부정, 부패, 무능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실추시켰고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와 같은 선거 제도의 신뢰를 오염시켜온 바 작금의 선거 농단 사태를 통해 더 이상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임이 확인되었음.

이에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다시는 우리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서면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수사·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특별검사등의 비밀유지 의무, 수사 내용 공표·누설 금지, 파견 공무원의 소속 기관 보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 금지 등

의무를 규정하고, 검사의 의무 준용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안 제8조, 제22조 및 제23조).

마. 수사 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및 2회(각 30일) 연장, 기간 만료 시 사건 인계 및 인계 후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재판의 우선·신속 진행, 공개심리 원칙, 재판 중계 허가, 속기 및 녹음·영상녹화 의무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사. 사건 처리보고 및 대국민보고(브리핑) 절차, 특별검사 등의 보수·경비, 사퇴·후임 임명, 해임 제한 및 신분보장, 회계보고 및 서류 인계, 이의신청 절차,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수사방해 및 비밀 누설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II. 백혜련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6. 8.
3. 회부연월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제114조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그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헌법이 독립기관으로 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임.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투표 당일,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고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음.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 전반에 대한 불신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확산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 그럼에도 현재 진상규명은 사실상 사태의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에 맡겨져 있어 조사의 독립성·중립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이 이미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있으나 사안의 헌법적 중대성과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예산·행정·형사 책임이 교차하는 복합적 성격에 비추어 통상의 수사절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함.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인쇄 물량 축소 결정의 책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태 대응 및 그 축소·은폐 여부 등을 수사하고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훼손된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피, 은닉, 증거인멸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

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Ⅲ. 유상범의원안

1. 제안이유

1. 발 의 자 : 유상범의원 등 1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6. 9.
3. 회부연월일 : 2026. 7. 1.

2. 제안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또한,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전 조치 없이 개표가 강행되었고, 투표함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참관·입회 절차 없는 투표함 반출·이송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뿐만 아니라, 봉인지 훼손, 비정상적 투표용지 전달, 타지역 투표지 발견, 이상 개표정보,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정당 투표 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의혹 등 선거관리 전반에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고, 헌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계하였음. 이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오로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참정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고, 투표부터 개표까지 선거 전반에 걸쳐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개표 중단 또는 보류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경위가 무엇인지,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존하였는지, 투표함 반출·이송·개봉 과정에서 참관·입회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였는지,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경찰을 통해서 과잉 진압 등 위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수사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선거사무 종사자, 경찰 등 관계기관이 포함될 수 있어 통상 수사기관만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 국민 참정권 침해, 투표함·투표지 관리 하자, 개표 검증 하자, 관련 은폐·무마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투표함의 불법적 반출·이송 의혹, 참관·입회 절차 미보장, 봉인지 훼손, 비정상적 투표용지 전달, 타지역 투표지 발견, 이상 개표정보,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정당 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었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동일·유사한 선거 부정 의혹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검사 15명 이내,

과건검사를 제외한 과건공무원 130명 이내의 수사 규모를 규정함(안 제8조).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고,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회계보고, 재판권 및 재판관할,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에 대한 벌칙, 공무원 의제, 형벌 감면 및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부칙).

IV. 한병도의원안

1. 제안이유

1.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61인
2. 제안연월일 : 2026. 7. 9.
3. 회부연월일 : 2026. 7. 10.

2.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둔 이유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이자 소중한 참정권을 어떠한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국가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단순한 행정 과실을 넘어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사안임.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총체적인 관리 부실, 선거법 위반 등 절차적 위법 행위의 결과임이 명백히 드러남.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는 핵심 지침이 중앙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처리되었으며 선거 당일 정오 무렵부터 이미 용지 부족 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내부 보고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음.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자체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와 민원을 통해서야 인지하는 등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음. 또한, 언론사의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시간 연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들까지 확인된 바 있음.

국회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책임과 선거부정 개입 여부 등 핵심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참정권 침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함.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5%가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본 사태의 규명을 위해 반드시 특별검사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별도의 기관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력한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 선관위는 그간 이러한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의 객관적인 감시와

통제를 거부해 왔음. 이처럼 폐쇄적인 구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적 조사나 일반적인 강제수사를 뛰어넘어, 선관위의 특수성을 엄격히 공략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필수적임.

둘째, 현재 일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본질적으로 행정부 소속이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나 선거 결과의 이해득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선거 무효 소송 및 수사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외풍을 원천 차단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하기에는 입법부가 임명하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적임임.

셋째,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형법상 직무유기나 선거법 위반을 넘어, 주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한 ‘헌법 침해 사건’임. 헌법기관이 초래한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해 또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하고 독립적인 사법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헌정적 책무임.

이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이를 통해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하며, 공명선거의 가치를 다시금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안 제2조).
- 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5명의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자.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2조).

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 네 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게 함으로써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임.

이에 더하여 김은혜의원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책임 회피 문제 및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백혜련의원안은 본투표용 투표용지의 인쇄 물량 산정 및 그 기준의 개정·시행 등 투표의 준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및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사이의 직무 불이행·책임 회피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유상범의원안은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음에도 개표를 강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투표함이 불법 반출·이송되었다는 의혹 사건 및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투표용지가 보관·전달·이송되거나

타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의혹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병도의원안은 전북교육감 선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유권자 투표 누락 사태, 보관 상자 · 선거인명부 3대조 전표 등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 · 유출 · 폐기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선거 공문서 · 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및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및 채용 비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¹⁾.

- 참고로, 최근 국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함.

2026년 6월 18일부터 45일간 이뤄진 국정조사에서는 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② 투표용지의 인쇄, 배분, 보관 및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사태 발생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관리 제반,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④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1) 참고로, 김은혜의원은 유상범의원안의 발의자이고, 백혜련의원원은 한병도의원안의 발의자이기도 함.

실태 규명, ⑤ 투표 마감 시각 연장 및 장시간 투표함 반출 지연 등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 행정 공백 사태에 관한 진상조사, 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등 책임 규명, ⑦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⑧ 선거 관리 인력 운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고 2026년 7월 22일까지 청문회 등을 실시함.

- 2026년 7월 21일, 교섭단체 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검법안의 제명,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을 합의했고, 수사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2. 특별검사제도의 연혁

- 1999년 9월 30일 법률 제6031호로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 및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 임명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2026년 7월 현재까지 총 17건의 개별적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이하 “개별특검법”)이 제정·시행 되었음.²⁾

2) 각 개별특검법의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참조

○ 2014년에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근거³⁾를 마련하였음. 2026년 1월 현재까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된 사례는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2021. 4.)와 안권섭 ‘관봉권 따지 폐기 의혹 및 구광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2025. 11.)등 총 2차례가 있으며,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에도 개별 특검법이 7차례⁴⁾ 제정·시행된 바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및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검 수사기간 중 각각 1차례 개정된 바 있음.

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23호, 2014. 6. 19. 시행)

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11.시행),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8.5. 시행),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2.4. 시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6.시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6.시행),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6.시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6.1.시행)

- 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대상⁵⁾으로 함.

3. 제정안의 주요내용

- 네 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추가적으로 김은혜의원안은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책임 및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및 선관위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백혜련의원안은 본투표용 투표용지의 인쇄 물량 산정 및 그 기준의 개정·시행 등 투표의 준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지휘·보고에

5)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①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②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서, 국회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한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지휘·보고에 관한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및 이와 관련하여 범인도피·은닉, 증거인멸·은닉·위조 또는 그 교사, 위증, 수사 또는 재판의 방해·지연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유상범의원안은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음에도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하지 아니하고 개표를 강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었거나 투표함이 불법적으로 반출·이송되었다는 의혹 사건, 이송 경로 이탈, 봉인지 훼손, 봉인지 번호 불일치, 영상자료 미보전 등으로 투표함 관리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 사건,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관·전달·이송되었거나 타 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병도의원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전북교육감 선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유권자 투표 누락 사태, 개표 사무 관리 부실 및 선거 데이터 관리 부실 혐의 사건, 투표 종료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기표 용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및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및 채용비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임.

- 제정안에 따라 국회의장이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법률에 정해진 기관의 장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단체는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가 12명(김은혜의원안), 8명(백혜련의원안) 또는 6명 이상 10명 이하(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4명(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또는 5명(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함.

또한,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을 40명(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100명(유상범의원안) 또는 50명(한병도의원안)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파견검사 20명(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15명(유상범의원안) 또는 30명(한병도의원안) 및 파견검사를 제외한 40명(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130명(유상범의원안) 또는 70명(한병도의원안) 이내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수사기간은 준비기간(20일 이내)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백혜련의원안) 또는 90일(김은혜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이내로 하되,

세 건의 의원안(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은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반면 김은혜의원안은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

기간을 각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설특검법과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 상설특검법과 네 건의 제정안 비교

구 분	상설 특검법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수사 대상	① 국회 본 회 의 의결 사 건 ② 법무 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판단 한 사건	①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된 범죄 의혹 일체 ②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 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③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 민 집회에 대한 국 가폭력 사태와 관 련된 범죄 의혹 일 체 ④ 선거관리위원회 의 부정 부패와 관 련된 범죄 의혹 일 체 ⑤ ①-④까지와 관 련된 고소·고발사 건 ⑥ ①-⑤까지의 수 사 과정에서 인지 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 사를 방해하는 일 체의 행위	① 본투표용 투표용 지의 인쇄 물량 산 정 및 그 기준의 개정·시행 등 투 표의 준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 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② 투표소별 투표용 지의 배분·이송 및 부족분 보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유기 하거나 그 밖의 위 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③ 투표용지가 부족 했던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보관·이 송 등 사후 조치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거 나 그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는 범죄 혐의 사건 ④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와 시·도선거 관리위원회 사이에 서 지휘·보고에 관한 직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 였다는 범죄 혐의	①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 련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 는 선거 부정 의혹 사건 ② 제1호의 사건 등 중대한 선거 부 정 의혹이 발생하 였음에도 투표함· 투표지 및 관련 자 료를 즉시 보전하 지 아니하고, 개표 중단 또는 보류 조 치 없이 개표를 강 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③ 투표함과 투표지 의 보전을 요구하 던 국민에 대하여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었거나, 선거 관리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 지휘·협조 아래 투표함이 불법적으 로 반출·이송되었 다는 의혹 사건 ④ 투표함·사전투 표함·우편투표함 의 보관·반출·이	①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과정과 실제 개표 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하여 국민의 참정 권을 침해한 범죄 혐의 사건 ②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선 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범죄 혐의 사건 ③ ①·② 사건 관 련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각급 선거관 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조사를 고의 로 지연·은폐하거 나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④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 등 각급 선 거관리위원회가 공 식 의결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본 투표용지 인쇄 물 량 하한 기준을 축 소하는 등 의사결 정 과정 전반에서

구 분	상설 특검법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사건 ⑤ ①-④까지 사건 관련 범인도피·은닉, 증거인멸·은닉·위조 또는 그 교사, 위증, 수사 또는 재판의 방해·지연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⑥ ①-⑤까지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⑦ ①-⑥까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송·개봉 과정에서 정당한 참관·입회 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송 경로 이탈, 봉인지 훼손, 봉인지 번호 불일치, 영상자료 미보전 등으로 투표함 관리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 사건 ⑤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가 지퍼백, 종이봉투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관·전달·이송되었거나, 타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투표용지·투표지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건 ⑥ 송도1동·송도2동 등 다수 지역에서 후보자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공개된 것과 관련한 입력·집계·검증 과정의 문제, 무효표 또는 이상 투표지의 유효표 처리 등 개표 관리와 관련한 의혹 사건 ⑦ 투표용지 중복수령,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본인확인 절차 하자, 정당 투표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또는 공백,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등 투표 준비·투표 절차·참관 절차와 관련한 의혹 사건 ⑧ ①-⑦까지의 사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⑤ 투표 당일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 보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 선관위 지휘부의 보고 누락, 지연 보고 및 부실한 현장 대응 지시 등 지휘·보고 체계 전반의 직무유기 사건 ⑥ 전북교육감 선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유권자 투표 누락 사태, 개표사무 관리 부실 및 선거데이터 관리 부실 혐의 사건 ⑦ 투표 종료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기표용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⑧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및 채용 비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 ⑨ ①-⑧ 사건 관련 고소·고발 사건 ⑩ ①-⑧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구 분	상설 특검법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건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선거사무종사자, 경찰 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진상 규명 또는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무마·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각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 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의혹 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⑨ ①-⑧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⑩ ①-⑨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⑪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선거 부정 의혹 사건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미규정)	(미규정)	“관련 사건”의 정의 명확화 -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관련 사건”의 정의 명확화 -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구 분		상설 특검법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본범의 죄 -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에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그 본범의 죄 (좌 동)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에 또는 수단결과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특별 검사 임명	절차	① (지체 없이) 대통령의 후보자추천의뢰 ② (5 일 이 내) 특별후보추천위원회 특별검사후보자 2인	①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 -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요청 ② 대통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 의뢰 간주 ③ 국민의힘은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①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 -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 ③ 교섭단체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는 각 1인의 특별검	①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 -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요청 ② 대통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 의뢰 간주 ③ 국민의힘은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①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 -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은 한국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 ③ 각 단체는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구 분		상설 특검법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추천 ③ (3일 이내) 대 통 령 의 특 별 검 사 임명	- 의뢰서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 할 경우 연장 자 임명 간주	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미규정)	- 의뢰서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 할 경우 연장 자 임명 간주	- 의뢰서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⑤ 대통령이 특별 검사 임명을 하 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 사로 임명	
	자 격	15년 이 상 판사· 검 사·변 호사 경 력 변호 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재직연수 합산) 있었던 사람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 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 는 사람				
	결 격 사 유	1. 국민 이 아 닌 자 2. 공무 원 3. 특별검 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공무 원이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 진 자 또는 특별검 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당 적을 가졌 던 자 5. 공직선 거에 후 보자(예비 후보 자 포함)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미규정)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4. 공직선거에 후 보자(예비후보 자 포함)로 등 록한 사람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 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 일 전 1년 이내 에 당적을 가졌 던 자 5. 공직선거에 후 보자(예비후보 자 포함)로 등 록한 사람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미규정)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특별검사 임명 일 전 1년 이내 에 당적을 가졌 던 자 4. 공직선거에 후 보자(예비후보 자 포함)로 등 록한 사람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다만 상 설특검법에 따 라 임명된 특검 은 제외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 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 일 전 1년 이내 에 당적을 가졌 던 자 5. 공직선거에 후 보자(예비후보 자 포함)로 등 록한 사람	

구 분		상설 특검법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로 등록 한 사람 6. 공무원임용 결격자	5. 공무원임용결격 자	6. 공무원임용결격 자	5. 공무원임용결격 자	6. 공무원임용결격 자
	특별 검사보	① 7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 명요청(후보자 4인) ③ 대통령의 2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 명요청(후보자 12인) ③ 대통령의 4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 명요청(후보자 8인) ③ 대통령의 4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 명요청(후보자 6명 이상 10명 이하) ③ 대통령의 5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 명요청(후보자 6명 이상 10명 이하) ③ 대통령의 5인 임명
	특별 수사관	특 별 검 사가 30 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0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50인 이내 임명
	수사 협조 및 지원	① 수사 협 조 요 청 권 (불 응 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 지원요 청권 -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 권 다만, 파견요청 전 관계 기관장과 협의 의 무)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 청권) (미규정) ② 인력지원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미규정)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 청권) ②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본제작· 자료제출 요구 권(불응 시 징 계요청권) ③ 인력지원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 공수처 2인 이상 파견 (미규정)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 청권) ② 타법에 따른 비 밀 규정에도 불구 적법절차에 따라 제2조제1항 사건 관련 자료 열람· 사본제작·전자정 보 복제·자료제 출 가능 (불응 시 징계요 청권) ③ 인력지원요청권 - 파견검사 15인 이내, 파견공무원 13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④ 인쇄업체, 운송업 체, 전산시스템 운 영업체, 통신사업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협조 요청 가능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 청권) (미규정) ② 인력지원요청권 -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 공수처 2인 이상 파견 (미규정)

구 분	상설 특검법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수사 기간	① 준비 기 간 : 20 일 (수 사 금 지 명시) ② 원칙: 60일 ③ 연장: 30 일 (대 통 령 승 인사항) ④ 수 사 기 간 이 내 수사 미 완 료 또는 공 소 제 기 여부 미 결 정 된 경우 관 할 지방 검 찰 청 검 사 장 에게 인 계	① 준비기간: 20일 (증거 멸실을 막 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 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 건 공소유지 가 능) ② 원칙: 90일 ③ 연장: 30+30일 (국회 및 대통 령에게 보고) (미규정) ④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 결정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에게 인계	① 준비기간: 20일 (증거 멸실을 막 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 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 건 공소제기·유 지 가능) ② 원칙: 60일 ③ 연장: 30일(국 회 및 대통령에 게 보고) ④ 재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사 항)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 결정된 경 우 국수본부장 에게 인계	① 준비기간: 20일 (증거 멸실을 막 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 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 건 공소제기·유 지 가능) ② 원칙: 90일 ③ 연장: 30일(국 회 및 대통령에 게 보고) ④ 재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사 항)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 결정된 경 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수 본부장에게 인 계	① 준비기간: 20일 (증거 멸실을 막 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 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 건 공소제기·유 지 가능) ② 원칙: 90일 ③ 연장: 30일(국 회 및 대통령에 게 보고) ④ 재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사 항)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 결정된 경 우 국수본부장 에게 인계
재판 기간	①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② 2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③ 3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 정, 공소 제기, 판 결 확 정 시 10일 이 내 에 대 통 령 · 국 회 에 서 면 보 고, 법무 부장관에게 서면 통지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시 10일 이내에 대통령, 국회에 서면 보고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 가능			

4.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본투표용 투표용지의 인쇄 물량 산정 및 그 기준의 개정·시행 등 투표의 준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과 실제 개표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3.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4.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투표소별 투표용지의 배분·이송 및 부족분 보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 밖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보관·이송 등 사후 조치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지휘·보고에 관한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피·은닉, 증거인멸·은닉·위조 또는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선거 부정 의혹 사건 2. 제1호의 사건 등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음에도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하지 아니하고, 개표 중단 또는 보류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3. 투표함과 투표지의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하여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었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지휘·협조 아래 투표함이 불법적으로 반출·이송되었다는 의혹 사건 4. 투표함·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의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에서 정당한 참관·입회 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송 경로 이탈, 봉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범죄 혐의 사건 2.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조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4.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5. 투표 당일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그 교사, 위증, 수사 또는 재판의 방해·지연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인지 훼손, 봉인번호 불일치, 영상자료 미보전 등으로 투표함 관리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 사건 5.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가 지퍼백, 종이봉투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관·전달·이송되었거나, 타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투표용지·투표지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건 6. 송도1동·송도2동 등 다수 지역에서 후보자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공개된 것과 관련한 입력·집계·검증 과정의 문제, 무효표 또는 이상 투표지의 유효표 처리 등 개표 관리와 관련한 의혹 사건 7. 투표용지 중복수령,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본인확인 절차 하자, 정당 투표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또는 공백, 투표용지	부족 상황 보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선관위 지휘부의 보고 누락, 지연 보고 및 부실한 현장 대응 지시 등 지휘·보고 체계 전반의 직무유기 사건 6. 전북교육감 선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유권자 투표 누락 사태, 개표 사무 관리 부실 및 선거데이터 관리 부실 혐의 사건 7. 투표 종료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기표 용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선거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8.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및 채용 비리 등 기관 운영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등 투표 준비·투표 절차·참관 절차와 관련한 의혹 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선거사무종사자, 경찰 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진상 규명 또는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무마·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각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 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의혹 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수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11. 그 밖에 언론 보도 등으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선거 부정 의혹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관계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또는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에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에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 제명과 관련하여,

김은혜의원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백혜련의원안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유상범의원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한병도의원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명으로 규정함.

네 건의 제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나, **백혜련의원안**은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하나로 보고 있는 반면, **한병도의원안**은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대등하게 보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 이에 더하여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참정권 침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또한 **김은혜의원안**은 투표 ‘농단’ 사태로 규정하고 있고, **유상범의원안**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선거 부정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26년 7월 21일, 교섭단체 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검법안의 제명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김은혜의원안 제2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책임 및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및 선관위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및 위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규정함.

백혜련의원안 제2조제1항은 투표의 준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선거사무 관리에 관한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사후 조치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범죄 혐의 사건, 중앙-시·도 선관위 간 직무 미이행·책임 회피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위 각 사건 관련 범인도피·은닉, 증거인멸·은닉·위조 또는 그 교사, 위증, 수사 또는 재판의 방해·지연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관련 고소·고발 사건 및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규정함.

유상범의원안 제2조제1항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선거 부정 의혹 사건,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음에도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하지 아니하고,

개표 중단 또는 보류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투표함과 투표지의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하여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었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지휘·협조 아래 투표함이 불법적으로 반출·이송되었다는 의혹 사건, 투표함·사전 투표함·우편투표함의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에서 정당한 참관·입회 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송 경로 이탈, 봉인지 훼손, 봉인지 번호 불일치, 영상자료 미보전 등으로 투표함 관리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 사건,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가 지퍼백, 종이봉투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관·전달·이송되었거나, 타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투표용지·투표지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건, 송도1동·송도2동 등 다수 지역에서 후보자별 관내사전 투표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공개된 것과 관련한 입력·집계·검증 과정의 문제, 무효표 또는 이상 투표지의 유효표 처리 등 개표 관리와 관련한 의혹 사건, 투표용지 중복 수령,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본인확인 절차 하자, 정당 투표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또는 공백,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등 투표 준비·투표 절차·참관 절차와 관련한 의혹 사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선거사무 종사자, 경찰 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진상규명 또는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무마·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각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 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의혹 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및 위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규정함.

한병도의원안 제2조제1항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과정과 실제 개표까지의 과정과 관련하여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범죄 혐의 사건, 각급 선관위에서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범죄 혐의 사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통해 수사·조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각급 선관위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 및 상급 선관위 지휘부의 지휘·보고 체계 전반의 직무유기 사건,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유권자 투표 누락 등 혐의 사건,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및 분실과 관련된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 위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규정함.

[표 2] 네 건의 제정안의 수사대상 비교

구분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 관련 의혹사건	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① 본투표용 투표용지의 인쇄 물량 산정 및 그 기준의 개정·시행 등 투표의 준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② 투표소별 투표용지의 배분·이송 및 부족분 보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 밖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③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보관·이송 등 사후 조치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그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지휘·보고에 관한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①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선거 부정 의혹 사건 ② 제1호의 사건 등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음에도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를 즉시 보존하지 아니하고, 개표 중단 또는 보류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④ 투표함·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의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에서 정당한 참관·입회 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송 경로 이탈, 봉인지 훼손, 봉인지 번호 불일치, 영상자료 미보전 등으로 투표함 관리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 사건 ⑤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가 지퍼백, 종이봉투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관·전달·이송되었거나, 타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투표용지·투표지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건 ⑥ 송도1동·송도2동 등 다수 지역에	①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과 실제 개표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범죄 혐의 사건 ②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범죄 혐의 사건 ③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조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④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⑤ 투표 당일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 보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 선관위 지휘부의 보고 누락, 지연 보고 및 부실한 현장 대응

구분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서 후보자별 관내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공개된 것과 관련한 입력·집계·검증 과정의 문제, 무효표 또는 이상 투표지의 유효표 처리 등 개표 관리와 관련한 의혹 사건 ⑦ 투표용지 중복 수령,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본인확인 절차 하자, 정당 투표참관인·정당추천위원배제 또는 공백,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등 투표 준비·투표절차·참관 절차와 관련한 의혹 사건	지시 등 지휘·보고 체계 전반의 직무유기 사건 ⑦ 투표 종료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기표 용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선거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청와대 등 정부기관 관련 의혹사건	②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③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③ 투표함과 투표지의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하여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었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지휘·협조 아래 투표함이 불법적으로 반출·이송되었다는 의혹 사건 ⑧ ①-⑦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선거사무 종사자, 경찰 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진상규명 또는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무마·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각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폐기하거나	

구분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허위자료 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의혹 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선관위 운영 관련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⑧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및 채용비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
기타 사건				⑥ 전북교육감 선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유권자 투표 누락 사태, 개표 사무 관리 부실 및 선거 데이터 관리 부실 혐의 사건
관련 사건 등	⑤ ①-④까지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⑥ ①-⑤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⑤ ①-④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 도피·은닉, 증거인멸·은닉·위조 또는 그 교사, 위증, 수사 또는 재판의 방해·지연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⑥ ①-⑤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⑦ ①-⑥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⑨ ①-⑧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⑩ ①-⑨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⑪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선거 부정 의혹 사건	⑨ ①-⑧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 ⑩ ①-⑧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및 한병도의의원안 제2조제2항은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로 하여금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유상범의원안 제2조제2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제2항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관계자’를 수범자로 포함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 제2조제3항은 인지된 관련 사건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임.

[표 3] 네 건의 제정안 인지된 관련 사건 정의 비교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미규정)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 증거인멸죄, 위증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행하여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 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유상범의원안과 같음)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진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u>동시에 또는 수단과 결과의</u>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u>동시 또는 수단결과의</u>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두 건의 제정안 제2조제3항제1호는 「형사소송법」 제11조제4호⁶⁾와 유사한 체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인도피죄’, ‘허위감정통역죄’를 포함할지 여부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유상범의원안 제2조제3항제3호는 한병도의의원안 제2조제3항제3호에 더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및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까지 관련사건에 포함하려는 것인데,

유상범의원안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이 열거되어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직무유기·직권남용·자료폐기·허위자료 또는

6)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허위공문서 작성·증거 인멸 또는 인멸교사 등의 ‘범죄혐의’가 열거되어 있음에도 안 제2조제3항제3호에서 ‘범죄혐의’를 또다시 규정하는 것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역대 개별특검법 중 안 제2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입법례⁷⁾를 살펴보면 **한병도의원안**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참고로, 기존 개별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례를 살펴보면, ㉠ 특정한 의혹사건으로 한정된 사례,⁸⁾ ㉡ 특정한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의혹사건으로 규정한 사례,⁹⁾ ㉢ 특정 의혹사건 및 관련사건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모두 규정한 사례,¹⁰⁾ ㉣ 특정

7)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8)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으로 한다.

1.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2.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9)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한다.

1.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외압의혹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및 외압의혹, 러시아 알파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 이와 관련된 의혹사건
2. 제1호의 참여과정에서 전대월 하이앤드 그룹 대표·권광진 쿼에너지대표·허문석 코리아크루 드오일 대표와 관련된 의혹사건

10)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전 남한건설 대표이사 정용재가 부산지방검찰청 등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 및 시사인(2007년 8월 29일 등록 서울 다 07800)과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에 제보한 것과 관련된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직·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2.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이 2010년 6월 8일 방영한 것에서 출연한 인물들이 진술한 것과 관련한 전직·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의혹사건 및 관련사건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모두 규정하면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사례¹¹⁾가 있음.

- 김은혜의원안 제2조제1항제6호, 백혜련의원안 제2조제1항제7호, 유상범의원안 제2조제1항제10호 및 한병도의의원안 제2조제1항제10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관련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 하면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¹²⁾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되어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사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1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 12)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 2008. 1. 10.
-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수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특별검사가 법률전문가인 점,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7호가 ‘제1호 내지 제6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여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특정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제도를 통하여 수사를 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고, 특별검사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인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것인지 역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김은혜의원안 제2조제1항제4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는 매우 광범위한 표현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상범의원안 제2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언론보도 등’, ‘구체적인 의혹’은 매우 광범위한 표현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언론보도 등 매체에 의한 의혹제기’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를 수사대상의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선거 부정 의혹 사건’의 의미가 명확치 아니하다는 입장을 개진함.

나.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안 제3조~제5조)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국민의힘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를 합산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국민의힘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를 합산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각 1명씩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제4조(특별검사의 결정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4조(특별검사의 결정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4조(특별검사의 결정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정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제외한다.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 치적 중립 및 직무 상 독립) 특별검사 는 정치적으로 중 립을 유지하고 독 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 치적 중립 및 직무 상 독립) 특별검사 는 정치적으로 중 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 치적 중립 및 직무 상 독립) 특별검사 는 정치적으로 중 립을 유지하고 독 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 치적 중립 및 직무 상 독립) 특별검사 는 정치적으로 중 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 김은혜의원안 및 유상범의원안 제3조는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
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
하여야 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서면
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됨.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뢰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백혜련의원안 제3조는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고, 해당 단체가

대통령에게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됨.

한병도의원안 제3조는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한국법학교수회¹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¹⁴⁾,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고, 각 단체가 대통령에게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됨.

13) 「**한국법학교수회 정관**」 제 1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The Korea Law Professors Association, Inc. (KLPA):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고,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본회의 목적달성에 수반되는 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법학교육 발전방안의 연구 및 건의
3. 법학교육의 표준화 및 인증사업
4.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을 위한 방안의 제시
5. 학술연구논문집 및 회보 등의 발간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관**」 제1조(목적)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를 존중하여 입시, 교육, 법조인 배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대학원의 의견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하며, 긴밀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학술연구
2. 법학적성시험의 주관·시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3. 변호사자격시험제도에 관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4.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업
5.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사업

다만, 백혜련의원안과 한병도의원안은 대통령이 의뢰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백혜련의원안은 세 건의 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4] 네 건의 제정안 특별검사 임명절차 비교

김은혜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요청 ② 대통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서면 의뢰 간주 ③ 국민의힘은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연장자 임명 간주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 ③ 교섭단체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는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미규정)	①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② 대통령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③ 각 단체는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④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⑤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총 17건)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장(4건) 또는 대한변호사협회(5건)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교섭단체가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고¹⁵⁾,

그 밖에 2012년 9월 특검법¹⁶⁾에서는 민주통합당이, 2016년 11월 특검법¹⁷⁾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했으며, 2018년 5월 특검법¹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도록 했고, 2025년 6월 3건의 특검법¹⁹⁾ 및 2026년 1월 이른바 중합특검법²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
- 15)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2. 4. 26. 제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를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하여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16)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민주통합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1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18)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19) 「김건희와 명태균·김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6. 10. 제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6. 10. 제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6. 10. 제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비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참고로 2026년 7월 21일 교섭단체 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검 법안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을 합의하였으므로 합의 사항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되,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하여 총 6인으로 하며,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합의함.

- 한편, 안 제3조제3항에서 특별검사후보자의 자격으로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²¹⁾에 15년 이상(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 합산)’ 있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

20)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6. 1. 27. 제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21)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하였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임.

참고로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상설특검법²²⁾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으로 규정하고, 개별특검법에서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7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5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1건²³⁾),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 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4건²⁴⁾)이라고 규정한 사례가 있음.

- 네 건의 제정안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공무원 이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로 등록한 사람이거나, 공무원임용결격자 등은 특별검사가 될 수 없음.

다만, 백혜련의원안과 한병도의원안 제4조제3호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도

2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한병도의원안 제4조제2호 단서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
검사 및 특별검사보를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설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도 제정안의 특별
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은혜의원안 제4조제3호는 세 건의 제정안과 달리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는 그 기간을 불문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표 5] 네 건의 제정안 특별검사 결격사유 비교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미규정)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4. 공직선거에 후보자(예 비후보자 포함)로 등 록한 사람 5. 공무원임용결격자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 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에 후보자(예 비후보자 포함)로 등 록한 사람 6. 공무원임용결격자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미규정)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에 당적을 가졌던 자 4. 공직선거에 후보자(예 비후보자 포함)로 등 록한 사람 5. 공무원임용결격자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다만 상설특 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은 제외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 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에 후보자(예 비후보자 포함)로 등 록한 사람 6. 공무원임용결격자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김은혜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안 제4조제3호)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당적을 가졌던 자’의 기한의 제한 없이 특별검사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함.

다. 특별검사등(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6조~제8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6조~제9조)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 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 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 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 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 무의 범위를 이탈 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 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 실·대통령 경호처·대검찰청 ·경찰청·금융위 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	제6조(특별검사의 직 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 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 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 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 무의 범위를 이탈 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 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 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경찰청 등 관 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 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제6조(특별검사의 직 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 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 소유지 2. 제8조에 따라 임 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 무의 범위를 이탈 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 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 우에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각급 선 거관리위원회, 대검 찰청,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경찰청, 행정안전부, 지방자 치단체, 우정사업본	제6조(특별검사의 직 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 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 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 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 무의 범위를 이탈 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 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 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경찰청 등 관 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 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과 관련된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부, 조달청,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선거관리 자료, 투표록, 개표록, 선거인명부, 통합선거인명부 조회 기록, 투표용지 인쇄·납품·배부 기록, 투표함 인수인계 기록, 봉인지 번호 및 훼손 기록, CCTV, GPS, 블랙박스, 전산시스템 로그, 개표분류기 로그, 심사계수부 기록, 이의제기서, 사고보고서, 내부보고서, 지시문서, 전자문서, 영상자료, 사진자료, 그 밖의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 또는 법원의 영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사본 제작, 전자정보 복제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⑤ 특별검사는 그	⑤ 특별검사는 그	④ 특별검사는 그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30명 이내로 한다. ⑥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인쇄업체, 운송업체, 전산시스템 운영업체, 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로부터	⑦ 제3항부터 제5	⑦ 제3항부터 제6	⑥ 제3항부터 제5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해당 기관장의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 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 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 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사법경찰	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 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⑧ 특별검사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 중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관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을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이첩된 것으로 본다. ③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수사 또는 공소를 수행한 검사,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수사 또는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조직	받는 검사, 군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수사 또는 공소유지의 필요성, 사건 상호 간 관련성 등에 비추어 다른 기관이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다) 중에서 특별검사보 후보자 12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를 합산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후보자 중 연장자 순으로 5명이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②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	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⑦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그리고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그리고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 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 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 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정안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역할을 살펴보면,

특별검사는 안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안 제6조제1항제1호),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하며(안 제6조제1항제2호),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함(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7조제2항 및 유상범의원안 제8조제2항).

다만, 백혜련의원안은 세 건의 제정안과 달리 수사협조요청권(안 제6조제3항)과 인력지원요청권(안 제6조제5항)에 더하여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열람 또는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요구권(안 제6조

제4항)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백혜련의원안** 제6조제4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유상범의원안**은 **세 건의 제정안**과 달리 선거관리 자료, 투표록, 개표록, 선거인명부, 통합선거인명부 조회 기록, 투표용지 인쇄·납품·배부 기록, 투표함 인수인계 기록, 봉인지 번호 및 훼손 기록, CCTV, GPS, 블랙박스, 전산시스템 로그, 개표분류기 로그, 심사계수부 기록, 이의제기서, 사고보고서, 내부보고서, 지시 문서, 전자문서,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법률에 열거하고 있고,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 또는 법원의 영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사본 제작, 전자정보 복제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검사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해 인쇄업체, 운송업체,

전산시스템 운영업체, 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특징적임.

이 외에도 네 건의 제정안은 수사협조 요청 대상기관에 차이가 있음.

[표 6] 네 건의 제정안 특별검사 직무범위와 권한 비교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대검찰청·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 -선거관리 자료, 투표록, 개표록, 선거인명부, 통합선거인명부 조회 기록, 투표용지 인쇄·납품·배부 기록, 투표함 인수인계 기록, 봉인지 번호 및 훼손 기록, CCTV, GPS, 블랙박스, 전산시스템 로그, 개표분류기 로그, 심사계수부 기록, 이의제기서, 사고보고서, 내부 보고서, 지시문서, 전자문서,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 자료제출 요청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미규정)	②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권(불응 시 징계요청권)	(미규정) ② 타법에 따른 비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에 따	(미규정)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인력지원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미규정)	③ 인력지원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 공수처 2명 이상 파견 (미규정)	라 제2조제1항 사건 관련 자료 열람·사본제작·전 자정보 복제·자료제출 가 능 ③ 인력지원요청권 - 파견검사 15인 이내, 파견공무원 13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④ 인쇄업체, 운송업체, 전 산시스템 운영업체, 통 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협조 요청 가능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 공수처 2명 이상 파견 (미규정)

○ 제정안의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를 살펴보면, 김은혜의원안은 특별검사가 1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백혜련의원안은 8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그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하는데 반해(김은혜의원안 및 백혜련의원안 제7조제1항),

유상범의원안과 한병도의원안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유상범의원안 제8조제1항 및 한병도의원안 제7조제1항).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가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²⁵⁾, 역대 개별특검법도 대부분 특별검사보후보자 인원수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특검법²⁶⁾과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의원안은 후보자의 인원수를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김은혜의원안과 유상범의원안은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²⁷⁾,

2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2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27)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일부 발췌

1.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와 피고인 2의 업무수첩과 진술(이하 '피고인 2의 업무수첩 등'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두 건의 제정안은 상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도 파견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이른바 3대 특검법 및 종합특검법에서 동일한 규정이 마련 되어 있음.

- 김은혜의원안과 백혜련의원안은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안 제7조제3항), 관계 기관의 장에게 최대 20명의 파견검사와 최대 40명의 파견공무원 (파견검사 제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김은혜의원안²⁸⁾)

가. 피고인 1에 대한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생략)

라) 박◆혜 정부의 ○○○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죄형법정주의, 유추·확장해석금지, 공소장일본주의,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공소권 남용,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형사소송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8)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5억 1,800만원 등 3년간 총 111억 9,600만원(연평균 37억 3,200만원)으로 추계됨.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안 제13조(보수 등)	인건비	1,764	2,472	141	4,377	1,459
	운영비	2,553	1,844	93	4,490	1,497
	시설비	346	148	-	493	164
	사무실 임차료	855	930	50	1,835	612
	합계	5,518	5,393	285	11,196	3,732

제6조제4항 및 백혜련의원안²⁹⁾ 제6조제5항).

유상범의원안은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안 제8조제3항), 관계 기관의 장에게 최대 15명의 파견검사와 최대 130명의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제5항)³⁰⁾.

주 1.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 8월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각각 최장기간(170일, 12개월)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9)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101억 3,500만원(연평균 50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연평균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안 제13조(보수 등)	인건비	1,715	2,296	4,011	2,006
	운영비	2,438	1,532	3,970	1,985
	시설비	490	-	490	245
	사무실 임차료	825	838	1,664	832
	합계	5,468	4,666	10,135	5,068

주 1.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 8월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각각 최장기간(140일, 12개월)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0)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두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0억 500만원 등 3년간 총 242억 3,200만원(연평균 80억 7,700만원)으로 추계됨.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10조(수사기간 등), 안 제11조(재판기간 등), 안 제14조(보수 등)	인건비	4,033	5,420	309	9,762	3,254
	운영비	6,102	3,360	157	9,619	3,206
	시설비	826	248	-	1,075	358
	사무실 임차료	2,044	1,648	84	3,777	1,259
	합계	13,005	10,676	550	24,232	8,077

주 1.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 8월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각각 최장기간(170일, 12개월)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병도의원안은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안 제7조제4항), 관계 기관의 장에게 최대 30명의 파견검사와 최대 70명의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제4항)³¹⁾.

백혜련의원안과 한병도의원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명 이상 의무적으로 파견받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적임(백혜련의원안 제6조제6항 및 한병도의원안 제6조제5항).

[표 7] 제정안의 조직규모 비교

구분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특별검사보후보자	12명	8명	6명 이상	10명 이하
특별검사보	4명		5명	
특별수사관	40명		100명	50명
파견검사	20명		15명	30명
파견공무원 (파견검사제외)	40명 -백혜련의원안은 공수처 2명이상 의무파견		130명	70명 -공수처 2명이상 의무파견

31)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7억 6,600만원 등 3년간 총 145억 3,900만원(연평균 48억 4,600만원)으로 추계됨.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인건비	2,189	3,008	172	5,369	1,790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운영비	3,792	2,189	104	6,086	2,029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시설비	514	165	-	678	226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사무실 임차료	1,270	1,080	56	2,406	802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합계	7,766	6,442	332	14,539	4,846
안 제13조(보수 등)						

주 1.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 8월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각각 최장기간(170일, 12개월)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김은혜의원안 제6조제5항, 백혜련의원안 제6조제7항, 한병도의원안 제6조제6항은 특별검사의 협조요청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이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상범의원안 제6조제7항 전단은 관계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나, 같은 항 후단에서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체계의 정합성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 징계절차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²⁾

- 다음, 유상범의원안 제7조 및 한병도의원안 제6조제8항은 특별검사의 이첩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음.

3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특정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관계 기관의 장이 제5항 본문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두 건의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이첩요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³³⁾ 및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³⁴⁾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입법례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두 건의 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별특검법상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3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4)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근거³⁵⁾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는 실무례를 감안할 때, 수사 중 사건의 이첩 근거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요구 내용이 **유상범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될 경우 조문 제목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유상범의원안 제7조제5항은 이첩받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수사 또는 공소유지의 필요성, 사건 상호 간 관련성 등에 비추어 다른 기관이나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재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마련된 제도로(2019. 2. 28. 2017헌바196), 종합특검이 그 취지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을 임의로 원 수사기관에 재이첩할 수 있게 될 경우 특검의 재량으로 변경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3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미완료·기소여부 미결정 사건의 귀속처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유상범의원안 제10조제6항 본문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³⁶⁾.

- 한편, 네 건의 제정안은 동일하게 제8조(유상범의원안은 제9조)제1항
에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함)
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 제8조(유상범의원안은
제9조)제2항에서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안 제9조(유상범
의원안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및 제12조(유상범
의원안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⁷⁾,

안 제8조(유상범의원안은 제9조)제4항에서 상설특검법³⁸⁾과 마찬가지로

36)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844호)에서 동일한 취지의 개정사항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 상기한 검토사항이 고려되어 입법화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37) 김은혜의원안은 구체적인 조문을 열거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3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로 특별검사등의 영리행위 및 검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김은혜의원안 제6조제3항 및 유상범의원안 제6조제3항 · 제6항 · 제7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제출 · 수사협조 대상 기관 · 단체 등을 규정함에 있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협조를 넘어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그리고 가정적으로 이 중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 및 「형사소송법」 제218조³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 제출물 압수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상범의원안 제6조제4항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함.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9)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라.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9조~제12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10조~제12조)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④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 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이 법의 회계 보고 규정을 준용하되, 보고 기간의 기산일은 사건 인계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이	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법의 사건 처리보고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의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의 경우에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 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 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 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 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 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 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 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 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용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법정 내 재판 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	용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9조의 수사기간 등과 관련하여,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은혜의원안**은 수사 준비준비기간 중에는 공소유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칙적 수사기간은 **백혜련의원안**이 60일인 반면, **김은혜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90일로 규정되어 있음.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여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수사기간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안 제9조제5항 후단)도 두고 있으나, 김은혜의원안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수사기간 연장규정을 두지 않고 특별검사가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2회에 한해 각 30일 연장하여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백혜련의원안의 총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이내, 연장 60일로 최대 총 140일이고, 나머지 세 건의 제정안의 총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이내, 연장 60일로 최대 총 170일임.

[표 8] 네 건의 제정안 수사기간 및 미완료시 절차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① 준비기간: 20일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건 공소유지 가능 명시)	① 준비기간: 20일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건 공소제기·유지 가능 명시)	①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①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② 원칙: 90일	② 원칙: 60일	② 원칙: 90일	② 원칙: 90일
③ 연장: 30+30일(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미규정)	③ 연장: 30일(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③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③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④ 재연장: 30일(대통령 승인사항)	④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④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본부장에게 인계	⑤ (백혜련의원안과 같음)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수본부장에게 인계

- 김은혜의원안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설특검법 및 역대 개별특검법은 수사 미완료·기소여부 미결정 사건을 당초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검정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5년 9월 3대 특검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개정되었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백혜련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며,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하고 있는데,

유상범의원안과 달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의 범죄 사건은 국수본부장에게 인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이른바 3대 특검법 및 종합특검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기간 등과 관련하여, 네 건의 제정안은 상설특검법⁴⁰⁾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은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 대해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제10조제1항 및 유상범의원안 제11조제1항),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항소·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⁴¹⁾ 등의

4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1) 「형사소송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간은 각각 7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0조제2항 및 유상범의원안 제11조제2항).

네 건의 제정안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이른바 종합특검법과 같이 「법원조직법」 제57조⁴²⁾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영상 녹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백혜련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현행 개별특검법, 김은혜의원안 및 유상범의원안과 달리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 및 관계 공무원의 면책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42)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그 밖에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2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13조에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백혜련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 제9조제6항과 관련하여,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안 제9조제6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는 규정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네 건의 제정안 제10조(유상범의원안은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⁴³⁾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43)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건의 제정안 제10조(유상범의원안은 제11조)제5항과 관련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 초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예규 규정과 같이 일정한 예외를 정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가 있고,

백혜련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개별특검법, 김은혜의원안 및 유상범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 등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3조~제17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14조~제18조)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 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	제15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퇴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법의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사 기간 산정에 있어 전임 특별검사와 후임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이 법의 사건 처리 보고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	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2조에 따라 모든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공소 제기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6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해임된 경우,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① 특별검	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중 제8조제6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로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탄핵심판 계속기간(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결정 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제9조에 따른 수사기간 등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 중인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일까지의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8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모든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이 법의 임명 절차에 따라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며(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유상범의원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특별검사를 해임하되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함(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유상범의원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또한 네 건의 제정안은 안 제15조(유상범의원안 제16조)제1항제3호의 해임사유로서 상설특검법⁴⁴⁾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비밀의 누설, 영리 행위 및 검직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김은혜의원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은 다른 세 건의 제정안과 달리 특별검사 ‘해임 시 직무승계 규정’ 및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인력 운영으로 인한 특별검사보의 해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4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상설특검법과 같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은혜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탄핵심판 계속기간은 안 제9조에 따른 수사기간 등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표 9] 세 건의 제정안 신분보장 규정 비교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① 특검·특검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김은혜의원안 제1항과 같음)
② 특검·특검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시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	(미규정)
③ 탄핵심판 계속기간은 수사기간에 미산입	(미규정)

바. 재판권,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

(김은혜의원안 제18조~제23조,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제18조~제24조, 유상범의원안 제19조~제26조 및 안 부칙)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수사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제20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그 내용을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 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그 사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 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 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 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	--	---	--

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해당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

관 및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같은 법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다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수사기관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	
--	--	---	--

		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또는 공소유지 중인 경우에는 특별검사가 사건의 이첩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 또는 특별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제20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	---	--	---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0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제3조(실효의 효과에	제3조(실효의 효과에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0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각 규정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소청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및 파견검사 등의 직무와 권한, 이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검찰청 폐지 전에 검찰청 소속 검
---	--	---	---

			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특별검사에게 파견된 사람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남은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소속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승계된 기관으로 한다.
--	--	--	--

- **김은혜의원안** 제18조는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⁴⁵⁾, **백혜련의원안** 제18조, **유상범의원안** 제19조제2항 및 **한병도의원안** 제18조제2항은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제1심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상범의원안 제19조제1항 및 **한병도의원안** 제18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군 장병 거소투표 관련 선거관리 부실 사고에 대해 군검사가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을

45)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관할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끼리는 한 법원이 병합 관할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이송하거나 심리 병합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음.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이첩받은 경우를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이해됨.

[표 10] 네 건의 제정안 재판관할 규정 비교

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미규정)	(미규정)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짐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 준용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 준용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 준용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 및 내란·외환 특검법⁴⁶⁾ 등은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바,

제정안의 수사대상 범위, 사건의 이첩 규정,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6) 「김건희와 명태균·진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네 건의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제19조제1항 및 유상범의원안 제20조제1항).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외에 별도로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⁴⁷⁾
- 김은혜의원안 제20조는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를, 유상범의원안 제21조는 다른 수사기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김은혜의원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수사대상을 수사하고 있는 경우의 관계를 규정⁴⁸⁾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된 상설특검이 운영중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유상범의원안은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⁴⁹⁾

4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48)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동일한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

49)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유지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

입법례를 참고하되 제2항에서 해당 입법례와 달리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가 사건의 이첩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를 하려는 것인데, 유상범의원안 제7조에 이미 사건의 이첩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법률(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0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22조),

이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⁵⁰⁾에서 처음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임.

- 네 건의 제정안은 벌칙을 규정하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50)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김은혜의원안, 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1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23조),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한 경우,

김은혜의원안은 징역 또는 자격정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안 제22조),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징역, 자격정지,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지, 징역 또는 자격정지 중 하나를 처한 뒤 추가적으로 벌금도 부과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등, 파견공무원,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 또는 자격정지만 규정하고 있고⁵¹⁾, 개별특검법에서는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5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생략)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수사내용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병도의원안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한편, 백혜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이 법의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백혜련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4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26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9월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을 제정안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한 것임.

- 안 부칙과 관련하여, 네 건의 제정안은 시행일, 유효기간, 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공소시효의 정지 등 개별 특검법 제정 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부칙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효기간(안 부칙 제2조)에서 김은혜의원안은 세 건의 제정안과 달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개별특검법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감안하여 세 건의 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안 부칙 제3조)에서 **백혜련의원안** 및 **유상범의원안**은 **한병도의원안**과 달리 이 법의 실효로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백혜련의원안** 제20조 및 **유상범의원안** 제22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규정을 특례에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유상범의원안은 안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부칙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부칙이 의도하는 법률 효과가 달성될 것으로 보임⁵²⁾.

한편, **백혜련의원안**은 안 부칙 제5조에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설립되는 사항과 관련된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2026년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 사항을 반영한 부칙 규정인 것으로 보임.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백혜련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 제24조 단서 및 유상범

5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에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가 규정된 것은,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과 동 법에 따른 수사대상이 중복됨에 따라 그 법률 효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의원안 제26조 단서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특수성, 사안의 개별적·구체적 특성, 행위에 따른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 양형을 통한 형벌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060

※ 참고자료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법 률 명	본회의 의결일	공포일시행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1.16.	2026.1.2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김건희와 명태군·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4.15.	2022.4.2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8.5.21.	2018.5.2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6.11.17	2016.11.22.
이명박 정부의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9.3.	2012.9.21.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2.9.	2012.2.22.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0.6.29.	2010.7.1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2.17.	2007.12.28.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1.23.	2007.12.10.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5.6.30.	2005.7.2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3.11.10.	2003.12.6.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2003.2.26.	2003.3.15.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1.11.22.	2001.11.26.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1999.9.20.	1999.9.30.

* 역대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는 [참고자료2] 참조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은 2021. 4. 2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및 2025. 11. 17. 관보권 폐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등 총 2건이 있음.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 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종합 특검법
임명절차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 의회 -3일 이내 ③ 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좌동)	(좌동)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2일 이내 ③ 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2일 이내 ③ 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민주통합당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 본회의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지체없이 ③ 특검 후보 추천 위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교섭단체 합의로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협 회장 이 각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더불어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3일 이내 ③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2일 이내 ③ 더불어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회 -2일 이내 ③ 더불어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임명)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촉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 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종합 특검법
인명	자격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작동)	(작동)	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①15년 이상 법조경력 판사·검사· 변호사 ②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공공기 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 종사 또는 대학 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	(작동)	(작동)	(작동)
	결격사유	①공무원 ②법 시행 전 1년6 월 이내에 공무원이 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임 용결격자	①공무원 ②시행일 1 년 이내 공무원이 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임 용결격자	(작동)	(작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임 용결격자	(작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 년 이내 공 무원이었 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 자, 가졌던 자 ④공무원임 용결격자	(작동)	(작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 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 자 또는 특검임명 전 1년 이 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 후보 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임 용결격자	(작동) + 정당의 당적 을 가졌던 자	(작동)	(작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 내 대통령 령 비서 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 직에 있 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 후보 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임 용결격자	(작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 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 후보 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대 단, 3대 특검법 및 상설특검 법에 따라 임명된 특 검·특검보 제외 ④특검임명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 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직에 있었던 자 ⑤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특검임명 전 1년 이 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 ⑥공무원임 용결격자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 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종합 특검법	
특별 검사보	①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2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1인 임명	①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좌동)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10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5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2인 이상)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좌동)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이내) ③대통령의 4인 이내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6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12인) ③대통령의 6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이상 10인 이하) ③대통령의 5인 임명	
특별 수사관 명	특별검사가 사건당 12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6인 이내 임명	(좌동)	특별검사가 사건당 16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2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좌동)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5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0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8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5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00인 이내 임명	
권한	①수사협조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2인 이내, 파견 공무원 10인 이내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2회 이상 불응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 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 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 공무원 2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좌동)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 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 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위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 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좌동)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 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단, 파견요청 전 관계기관장과 협의 의무)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 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단, 파견요청 전 관계기관장과 협의 의무)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 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3인 이내, 파견 공무원 3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 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 동행 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70인 이내, 파견 공무원 1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파견 공무원 3명 이상을 공수차에서 파견반도록 명시) ③ 대통령기록물 열람권 ④ 미합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수행 검사교감사 지휘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70인 이내, 파견 공무원 1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파견 공무원 1명 이상을 공수차에서 파견반도록 명시) ③ 대통령기록물 열람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 공무원 6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파견 공무원 10분의 1 이상을 공수차에서 파견반도록 명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파견검사 15인 이내, 파견 공무원 1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 대통령기록물 열람권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 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종합 특검법
수사 기간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착: 3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6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착: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승인) (최장 10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착: 70일 ③연장: 30+2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 보고) (최장 125일)	①준비기간: 7일 (수사금지) ②원착: 30일 ③연장: 10일 (대통령승인) (최장 40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착: 35일 ③연장: 20일 (대통령승인) (최장 5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착: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착: 30일 ③연장: 15일 (대통령승인) (최장 4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착: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착: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진행, 공소 유지 가능 명시) ②원착: 90일 ③ 연 장 : 30+30일 (대통령, 국회 보고)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200일)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 본부장에게 인계	(작동)	①준비기간: 20일 (수사 진행 가능 명시) ②원착: 60일 ③ 연 장 : 30+30일 (대통령, 국회 보고)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70일)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 본부장에게 인계	①준비기간: 20일 (수사 진행 가능 명시) ②원착: 9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국회 보고)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70일)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 본부장에게 인계
재판 기간	①1심: 3월 ②2심: 2월 ③3심: 2월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①1심: 3개월 ②2심: 2개월 ③3심: 2개월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중간수사발표 규정없음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법무부장관 에게 서면통지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언론브리핑 가능 (파악시설 외의 수사과정)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재판 관할	서울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서울중앙지 법 합의부 전속관할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형사소송법」 상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작동)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형사소송법」 상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 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종합 특검법
정계 요구	-	-	-	-	-	-	-	-	-	-	-	-	-	-	-	-	-	국무위원보좌 상장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벌칙	① 직무수행방 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이하 벌금	① 직무수행방 해: 5년이하 징역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① 직무수행방 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이하 벌금	① 직무수행방 해: 5년이하 징역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② 공무상비밀누 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 년 이하 자격 정지	② 동행명령 거 부 1천만원 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위헌)				② 공무상비밀누 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 년 이하 자 격정지	② 공무상비밀누 설 3년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 지 또는 3 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③ 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 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 지										③ 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 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 지	③ 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 역, 5년이하 자 격 정 지 또는 3천만 원이하 벌 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④ 동행명령 거 부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직무수행 중 지득정 보 소속관 보고 3년이 하 징역, 5 년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 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 수사최장기간: 200일

※ 특검 최대 규모: 총인원(317인) - 특검(1인), 특검보(6인), 파견검사(70인), 파견공무원(140인), 특별수사관(100인)